

| 문서번호 | BSKS-1-1-21 |
|--------|-------------|
| 제정일자 | 1996.06.18. |
| 최종개정일자 | 2022.04.15. |
| 페이지 수 | 1/5 |

1996.06.18.제정 1998.03.01.개정 2004.12.01.개정 2006.03.01.개정 2007.06.11.개정 2014.02.01.개정 2019.07.16.개정 2020.03.03.개정 2020.09.25.개정

2022.04.15.개정 소관부서 : 교무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경상대학교 재학생들이 대학인으로서 사회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 현실사회에서 자신이 지닌 가치와 역할을 재발견하며, 학교교육에서 체득한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사회에 실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재학기간 중 사회봉사활동으로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 시간의 사회봉 사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와 보고서를 제출하여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교과목명 및 학점) ① 인정 교과목명은 '사회봉사활동'으로 한다.

- ② 학점의 인정 기준은 재학기간 중 실시한 봉사활동시간 16시간을 기준으로 1학점을 인 정하되 최대 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9.07.16., 2020.03.03.>
- ③ 재학 중 헌혈을 하였을 경우는 봉사활동시간 6시간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헌혈은 3회만을 인정한다. <개정 2020.03.03.>

제4조(이수구분) 이수구분은 교양으로 한다.

제5조 삭제 <2004.12.01.>

제6조 삭제

제7조(봉사활동의 유형)봉사활동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1. 지역사회봉사활동
 - 가. 지역사회의 역사조사 및 자료수집활동에 참여
 - 나. 지역사회의 수질, 환경오염에 대한 조사 참여
 - 다. 강, 산, 호수, 공원 등지에서의 환경정화활동
 - 라. 지역사회의 정원, 공원관리활동
 - 마. 지역사회의 식목행사에 참여



| 문서번호 | BSKS-1-1-21 |
|--------|-------------|
| 제정일자 | 1996.06.18. |
| 최종개정일자 | 2022.04.15. |
| 페이지 수 | 2/5 |

- 바. 지역사회의 자선활동에 참여
- 2. 자원봉사활동
 - 가. 사고, 홍수 등 재난에 대한 응급구호활동
 - 나. 소년. 소녀 가장 돌보기
 - 다. 재가장애인, 와병노인 돌보기
 - 라. 장애인, 노인들의 나들이 동행 보조
 - 마. 맹인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점역보조
 - 바. 청각장애인들의 통역
 - 사. 심신장애인들을 위한 교육 및 노력봉사
 - 아. 복지시설 수용아동들을 위한 교육 및 노력봉사
 - 자. 복지시설 수용 노인들을 위한 교육 및 노력봉사
 - 차. 해수욕장 관리 및 구조요원활동
 - 카. 농촌봉사활동
- 3. 공공봉사활동
 - 가. 관청 민원실에서 민원봉사활동
 - 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원봉사활동
 - 다. 각종 공공시설보수에 노력봉사활동
 - 라. 폐자재 수집 및 주민교육에 참가
 - 마. 지역의 유적관리활동에 참여
 - 바. 각종 체육 및 학습행사에 자원봉사활동
- 4. 국제단체 또는 종교단체의 사회봉사활동
 - 가. 방학 중 제3세계에 대한 봉사활동
 - 나. 해외선교봉사
 - 다. 종교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자선행사에 참여
 - 라. 적십자사 등 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
- 5. 위에 기술한 사회봉사활동이라도 유급(有給)활동은 제외한다.
- 제8조(봉사활동기간) 재학기간 중 수업시간 이외의 일정기간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총장의 허가를 얻어 수업시간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봉사활동 보고서 제출) 사회봉사활동에 참가한 학생은 봉사활동 기관에서 발행하는 봉사활동 증빙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교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사회봉사활동 확인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담당부서에서 일괄 결재한 내용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0.09.25.>

제10조 삭제

제11조(성적평가) 봉사활동의 성적은 학점인정(Pass: P)과 불인정(Non-Pass: N)으로 구분



| 문서번호 | BSKS-1-1-21 |
|--------|-------------|
| 제정일자 | 1996.06.18. |
| 최종개정일자 | 2022.04.15. |
| 페이지 수 | 3/5 |

하여, 학점인정자에게 수강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제12조(수강신청) 전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신청 자격을 부여받은 학생은 재학 중 본인이 선택하는 학기에 수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수강 신청학점에 포함하고 수강신청자에 한하여 소정의 학점을 부여한다.<개정 2019.07.1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2014.02.01.)에 의하여 『교무처』를 『교학처』 로 『산학처』를 『산학·취업처』로 명칭 변경하고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문서번호 | BSKS-1-1-21 |
|--------|-------------|
| 제정일자 | 1996.06.18. |
| 최종개정일자 | 2022.04.15. |
| 페이지 수 | 4/5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2020.09.25.)에 의하여『교학처』를『교무처』로 ,『산학취업처』를『학생산학취업처』로 명칭 변경하고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2022.04.15.)에 의하여 『학생산학취업처』를 『산학처』로,『기획처』를 『기획실』로,『입학홍보처』를 『입시홍보실』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문서번호 | BSKS-1-1-21 |
|--------|-------------|
| 제정일자 | 1996.06.18. |
| 최종개정일자 | 2022.04.15. |
| 페이지 수 | 5/5 |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0.09.25.>

사회 봉사활동 확인서

| 학 과 | (| <u>د</u> (| 라 (|)학년 | | | | |
|--------------------|---------|-------------------|---------------------|-----------|---------------|--|---|--|
| 학 번 | | | | 성 명 | | | | |
| 봉사활동시간 | | | · | | · | | | |
| 봉 사 활 동 일시 및 시간 | 년 년 년 년 | 9월 9월 9월 9월 9월 9월 | 이 이번 이번 이번 이번 이번 이번 | 년 년 년 년 년 | 월 일 일 일 일 일 일 | 일(일(일(일(일(일(일(|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 |

위와 같이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산 학 처 장 (인)

◎ 붙임 : 봉사활동기관 발행 확인서